

연구년제 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에 재직하는 교원이 일정 기간동안 강의부담이 없이 연구에 전념케 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년제도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연구년은 교원이 강의와 학생지도의 책임을 면제받고 연구에 전념하는 기간을 말하며 연구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신의 학문분야에서 지식과 전문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본교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.<조개정 2015.1.13>

1. 해외연구년 : 본교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급여 또는 연구비를 지원받고 해외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
2. 국내연구년 : 본교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급여 또는 연구비를 지원받고 국내대학 또는 연구기관,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
3. 연구학기 : 본교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급여 또는 연구비를 지원받고 6개월 이하의 국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,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

제2조의2(자격) ① 연구년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잔여기간이란 연구년 종료 후 잔여기간을 말한다.

1. 본교에서 최초 임용 후 6년 이상 근무한 교원으로서 정년퇴임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자. 다만, 연구학기 신청은 정년퇴임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
2. 직전 연구년(연구학기제외)을 마치고 6년 이상 근무한 교원으로서 정년퇴임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자. 다만, 연구학기 신청은 직전 연구년을 마치고 3년 이상 근무한 교원으로서 정년퇴임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
3. 연구년은 신청년도 기준 최근 2년간 연구업적(SCI급국제논문, 전국규모전문학술지 또는 국내 학술 저서 이상)이 100점 이상인 자. 다만, 연구학기는 신청년도 기준 최근 2년간 연구업적(SCI급국제논문, 전국규모전문학술지 또는 국내학술저서 이상)이 50점 이상인 자

② 연구년 대상 교원은 전체 교원의 10% 이내로 한다.<개정 2019.1.23.>

③ 각 전공별로는 휴직, 연구년 등을 포함하여 전공 소속교수의 1/3을 초과할 수 없다. 단 소속교수가 3명 미만인 경우 전공설립 6년 후부터 1인씩 격년으로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.

④ 연구년 대상자 중 연구년 교원으로 선발된 자가 개인적 사유로 연구년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선발 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후 3년간 연구년 선발을 제한한다.

⑤ 연구년 수혜는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<조신설 2015.1.13>

제3조(기간) ① 연구년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단 연구학기는 1학기(6개월)씩 실시한다.

② 연구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휴직 처리한다.

③ 연구년 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연구년에 한하여 총장이 연구기간을 2년 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.

④ 연구년 기간 중 교내 업무에 복귀한 경우 잔여 연구년 기간을 이월하지 않는다. 단 총장의 요청으로 복귀한 경우 잔여 연구년 기간을 이월할 수 있다.<조개정 2015.1.13>

제4조(신청) ① 연구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교학지원처장은 신청교원의 연구계획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일정을 수립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.

③ 교원인사위원회는 연구년 대상자 선정을 위해 별도로 정한 심사기준 및 방법에 의거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④ 총장은 매년 연구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및 방법을 결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의하도록 하고,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년 대상자를 선정한다.

⑤ 승인된 연구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년 기간의 1/2이 경과하기 전에 연구년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[별지 제3호 서식]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조개정 2015.1.13>

제5조(신분 및 보수) ① 연구년 기간 동안에는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보유한다.

② 연구교원에게는 해당 기간 중 보수 전액(급량비, 제 수당 제외)을 지급하며 그 기간 중에 승진 및 승급 등에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.<개정 2019.1.23.>

③ 해외연구년 교원이 연구년 연장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보수는 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.<항신설 2015.1.13>

④ 해외연구년 교원의 경우 해당 연구년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최종목적지까지의 왕복항공료(이코노미클래스)를 지원한다. 단 해외학기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.<항신설 2015.1.13>

제6조(선정) ① 연구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선정한다.

1. 연구실적이 현저하며 연구에 전념함으로써 학문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
2. 본교 교육계획에 기여할 특정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
3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② 전항에 의한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학부(과)당 1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7조(선정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보직자
2. 국내외 파견 또는 휴직, 교류교수 및 연구교원 등으로 최근 3년 이내에 1학기 이상의 강의면제를 받았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한 자
3. 정년퇴임이 연구년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자
4. 휴직 중인 교원. 단 총장이 연구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.<호신설 2015.1.13>

제8조(의무) ①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종료 후 즉시 종전의 직에 복귀하여야 한다.

②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종료 후 2년 이내에 퇴직하지 못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, 제9조의3(연구실적물 제출)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연구년 기간 중 지급된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1.23.>

④ 연구교원으로 선발된 교원은 자유로이 연구할 수 있다.

제9조(연구교원의 활동제한) ① 연구교원은 연구년기간 동안 본교 및 타 대학(대학원 포함)에서 강의할 수 없다.

② 연구교원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나 논문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논문지도가 진행 중인 경우
2.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연구교원은 본교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④<삭제 2015.2.1>

제9조의2(보고서제출) 본교 지원을 받는 해외연구년 교원은 파견지 도착 후 15일 이내에 체재지 도착 보고서를, 연구년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조신설 2015.1.13>

제9조의3(연구실적물 제출) ① 연구년을 수행한 교원은 연구년 종료 후 본인의 연구계획서에 의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전공영역에 따라 저서와 연구논문, 공연, 전시, 학교발전에 필요한 특별과제연구보고서 중 선택할 수 있다.

- ② 저서는 복귀 후 1년 이내에 학술저서(역서) 및 대학교재 이상의 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논문의 경우 1년 이상 연구년의 경우 전국 규모 학술지 이상급 1 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국제학술지는 복귀후 2년, 국내 전국 규모 전문학술지는 복귀 후 1년 이내에 발표하여야 하며, 연구학기의 경우전국규모 학술지 이상급 0.5편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구비는 「교원연구지원지침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공연 또는 전시의 경우 복귀 후 1년 이내에 전주를 포함한 광역시 이상의 공인된 장소에서 개인발표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- ⑤ 학교 발전에 필요한 특별과제 연구보고서는 연구년 기간 중 총장으로부터 학술정보수집, 학생교류, 자매결연협정 등 학교발전에 필요한 특별과제를 부여받은 교원에 한하며 복귀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<조신설 2015.1.13>

제10조(위임) 연구년제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심의는 본교 교무위원회에 위임하며, 결정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3. 1)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10. 6)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1. 13)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1. 23)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